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87
----------	------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1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김원태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2023. 12. 19.)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하나의 조례에 대해 유사한 내용이 담긴 2개의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장구” 정의 규정(안 제2조제5호·제6호 신설)
- 나. 협력기관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 규정(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6호)

- 다. 바퀴달린 놀이기구 중 “전동킥보드(PM)” 를 삭제(안 제8조제1항제2호)
- 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지도 등을 규정(안 제8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신설)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도로교통공사

제8조제1항제2호 중 “전동킥보드(PM)”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지도
5.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
6.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 안내

7.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
8.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

② (생략)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생략)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PM), 바퀴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신설>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생략)

②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인라인스케이트-----  
-----  
-----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지도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

6.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 안내

7.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

8.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

9.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